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65 | 2024.12.16 (2024.12.09~12.1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09~12.15)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 프로젝트 지원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의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민간 인공지능(AI) 전문 기업들이 본격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의 국제통합계좌 활용을 개선하고 국제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보완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소유·경영기간 산정 시 기존 시설과 이축한 시설의 소유·경영기간을 합산토록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조정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가 해당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덮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7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수소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0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15인)**」,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간주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해체 신고 대상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해체는 해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공사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도록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5인)**」 등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정무위>에서는 현안 질의(12.18.09:00)가 예정되어 있고,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12.18.41:00)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교육위>와 <농해수위>는 법안 심사, <외통위>는 현안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인공지능(AI)·로봇 등의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6
-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금융위원회)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8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8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8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9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9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1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1인) 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1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15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15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의원 등 10인) 16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17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0인) 17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의원 등 10인) 18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15인) 18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1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1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20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2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1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2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5인)..... 2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09~12.15) [바로가기](#)

- [ESG]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9)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바이오/헬스케어]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선정 안내
- [조세]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용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사건 승소 사례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4 (2024년 12월 2째주)
- [바이오/헬스케어] 공개변론을 거쳐 중앙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 [입법전략자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공지능(AI)·로봇 등의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

- 'AI 자율제조 전문기업' 디렉토리 작성
-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참여

2024-12-10

산업통상자원부는 'AI 자율제조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 프로젝트 지원 제도**를 설명하였음. 이날 행사에는 100개 이상 기업,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기업들은 회사와 기술을 소개한 후 수요기업들과 1:1 미팅도 진행하였음.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의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민간 인공지능(AI) 전문 기업들이 본격 참여한다고 밝힘

① 산업부는 내년 초까지 'AI 자율제조 전문기업' 디렉토리를 작성함

- 이 디렉토리는 산기평 주도로 생기연·전자연·기계연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산업계가 조사하여 작성할 예정임
-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로봇 기업, SI 기업(시스템 통합) 등 3개 분야별 10개 이내, 총 30개 내의 기업들이 선정될 계획임

② 이들 전문기업에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제공됨

-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연구개발(R&D)자금·금융·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AI로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금년 26개를 시작으로 '27년 200개까지 확대할 계획임
- 올해 사업에는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DN솔루션즈, 삼표시멘트 등 대한민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음
- 향후 선정되는 선도 프로젝트에는 전문기업 참여 여부 등이 평가에 반영되며, AI 전문기업들은 내년부터 1년 기간으로 지원되는 'AI 자율제조 미니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음

③ AI 전문기업들은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음

- 산업부와 생기연·전자연 등 연구기관들은 금년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26년부터 제 조 현장에 보급할 계획임
 - 제조 기업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 파운데이션 모델 : Open AI의 GPT와 같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해 지식과 패턴이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말하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가능,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은 제조 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조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함

산업부와 산기평은 'AI 자율제조 네트워킹 데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전문 기업들은 자체 보유한 기술과 실제 제조현장에서의 적용효과 등을 수시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밝힘. 아울러 AI 자율제조는 우리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며, AI 자율제조 성공적 확산과 AI 전문기업의 기술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

-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신규 지정 25건
-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 규제개선 수용 등 의결

2024-12-11

금융위원회는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고 밝힘.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음.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지정내용 변경(8건), 지정기간 연장(1건), 규제개선 수용(1건)을 결정하였음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음.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됨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동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 외에도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해 주었으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하였음. 아울러,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25건)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1건)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KB캐피탈 외 2개사(3건)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KB손해보험 외 5개사(7건)	
	KB증권 외 5개사(7건)	
	KB증권 외 4개사(7건)	
지정내용 변경(8건)	카사코리아 외 5개사	블록체인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 부동산, 음악저작권, 대출채권, 항공기엔진 (내용) 조각투자 업체 광고 부가조건 완화
	우리카드, 현대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설정, 임대차계약사실 검증 강화, 계약조건 변경여부 확인의무 등의 부가조건 추가
지정기간 연장(1건)	SK증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규제개선 수용(1건)	신한은행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개선)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10 시행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표준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또는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하여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견 조정에 관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해 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1 시행 예정
---------	--------------------------------------	------------------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정하는 한편,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의 감소율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10 시행
---------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0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및 변전소 지원금 단가를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상향하려는 것임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2-12 시행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등의 기준이 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종전에는 1지역 400mg/kg,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10 시행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자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하여 그 수립시기를 종전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일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하는 등 수립시기를 변경**하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의 범위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등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10 시행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신용거래능력, 기술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여신전문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2.11. ~2024.12.18.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의 국제통합계좌 활용을 개선하고 국제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세청에 등록이 필요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수정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외국 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
- ②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에 따라 과세에 필요한 외국법인 관련 정보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등록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 보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tel:044-218-4653) (전화: 044-218-4653, 팩스: 044-215-8065)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2.13. ~2024.12.18.
-------	--------------------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도 정비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로 운영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비함
- ② 기업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로 운영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비함
- ③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로 운영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비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tel:044-215-4236)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12.09.
~2025.01.20.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소유·경영기간 산정 시 기존 시설과 이축한 시설의 소유·경영기간을 합산토록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조정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허가 및 동일한 규모로 이축 가능한 요건, 건축물의 재축·개축·증축 및 대수선의 근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2024. 12. 31. 만료 예정인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기간을 2029. 12. 31.로 연장하여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6, 팩스: 044-201-5574\)](tel:044-201-3746)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2.12.
~2025.01.21.

긴급항공기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운전자 등의 편의를 증대하고, 항공기 고장·결함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긴급항공기 지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지정 신청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207조 등)
- ② 긴급항공기 운항 전 통지 방식(기존: 구술, 서면)에 비행계획서를 추가하고, 운항 종료 후에도 비행 종료 보고로 같음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208조)
- ③ 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해 이륙을 중단하거나, 운항 중 ‘비정상적인 출입문 개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장 보고토록 명확화 (안 별표 20의2)
- ④ 별표 47 제15호(항공종사자) 및 33호(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수수료 납부자 대상에 자격증명서 재발급 대상자도 포함하도록 개정 (안 별표 47)
- ⑤ 운항증명서 서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발급자 성명·서명·직위’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유효기간)은 위치변경 (안 별지 90)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전화: 044-201-4254, 팩스: 044-201-5628\)](tel:044-201-4254)

환경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2.12.
~2025.01.21.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현장 특성상 건설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작업 시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덮개 개방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방진덮개, 방진벽 등)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에 허용보관량 준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조건과 관계없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어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가 해당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덮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기본적 준수사항 외 허가권자가 부여할 수 있는 추가 허가조건에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문구 삭제

※ 문의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3, 팩스: 044-201-735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2024-12-10 발의
-------	---	---------------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7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안 제165조의6제5항 · 제6항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024-12-11 발의
-------	---	---------------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안 제165조의6)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2024-12-13 발의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4-12-11 발의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6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4-12-12 발의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주택공급부족이 심화되는 대안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안 제97조의9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2-12 제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4-12-10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다량 예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구매 행위가 제한되고 암표 시장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경기·시설 등의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2024-12-10 발의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의 질서 내에서 단순히 인간을 돕고 보완하던 지능정보사회의 초기 단계를 지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를 맞이함.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23.9.)」 발표 및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 수립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사회 심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함

그러나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 초기 단계에서의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의 목적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의 지향점을 확장함 (안 제1조)
- ② 제6장제1절의 제목을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에서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으로 개정하여 해당 절의 목적을 명확히 함 (안 제6장제1절)
- ③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기준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4조의2)
- ④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2-12 제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사업이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2024-12-09 발의

패션 분야는 혁신적 창조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조산업이나 저작권산업의 분류에 포함시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디자인이나 전통의상 등에 패션의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하나의 문화산업으로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미래 산업으로서 패션 산업의 진흥과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바목)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2024-12-10 발의

연안은 바다와 호수, 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하여 연안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연안 침수 및 침식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연안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연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연안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침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평가사항 중 일부로서 연안침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8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0인)

2024-12-10 발의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수소유통전담기관·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인 수소분야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기술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진보된 신기술로써 현행과 같은 전담기관 지정방식보다는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4-12-10 발의

현행 제도하에서 무권리자가 특정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디자인권을 재출원해야 함.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수반되므로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를 실시하여 무권리자에 의해 도용된 특허권을 되찾으려 할 때 등록무효심판 없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바로 특허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디자인권 관련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청구를 불가하게 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제한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증을 정당한 권리자 명의로 재발급하여 정당 권리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함

한편, 권리이전 등록 전에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등록이라는 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실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할 때는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도록 하여, 선의의 무권리자를 보호하면서 그 실시를 통해 갖추어진 디자인의 물품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라는 법 목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안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15인)

2024-12-1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허가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공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 제작에 대하여 선발주하고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10조 및 제17조)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2024-12-10 발의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의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024-12-10 발의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제76조의4)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2024-12-10 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됨. 국민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게 되는 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은 국민 개인의 노력에 맡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특히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제품의 판매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이 자원순환보증금이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나, 현실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실제 1회용 컵의 사용량이 많은 매장 중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중이 높음.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가 판매하는 1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음. 이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구입과 처리 비용이 싼 환경부장관 지정 표준용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맹거래 관행 상 한계가 있음

더욱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의 주체가 본사인지 가맹사업자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담이 모두 가맹사업자에게 떠넘겨질 우려도 존재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간주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의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 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2024-12-10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 도중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4항)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024-12-10 발의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1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건설업 등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그래서,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12-12 발의

현행법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신고를 하는 소형 건축물이라도 해체계획서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 해체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전부에 대해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서명 날인하도록 함에 따라 놓여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등 해체 절차에 대해 간소화 요구가 빈번하고, 건축물 외벽의 경미한 마감재 수선도 해체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해체는 해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여 건축물 해체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12-12 발의

현행법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음. 해체 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신청의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상이로 인한 공사 진행에 불편 사항이 있음

이에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1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의원 등 15인)

2024-12-12 발의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철도 사업”이라 함)은 2001년 인천공항철도가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이래 신분당선 등 수도권 간선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수의 대형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공사·현장 관리)과 한국부동산원(토지보상) 등 사업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민자철도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일부 민자철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기간 장기화, 인허가 및 지작물 이전 지연 등의 사유로 개통시점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 인력의 한계로 민자철도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민자철도 사업을 적기개통하여 국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공사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도록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9제1항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12/18(수) 09:00	- 현안 질의
	법안심사2소위	12/18(수) 14:00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기재위	전체회의	12/16(월) 10:00	- (개회 요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12/18(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18(수) 14:00	- 의안 상정 및 의결, 현안 질의
외통위	전체회의	12/16(월) 10:00	- 현안 보고
농해수위	농림축산법안소위	12/19(목) 10:00	- 안건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17(화) 07:30	한중 주요 현안 대외정책 세미나	이병진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2/17(화) 10:00	한국 공연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 엔터투어먼트시대의 공연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임오경·송석준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18(수) 10:30	중대(시민)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토론회	박용갑·문진석 의 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2/19(목) 10:00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1차]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허종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12/19(목) 10:00	바이오헬스 디지털혁신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 의료데이터 현황과 나아갈 길	최수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0(금) 10:00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김종민·이성권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자료집 등	12/16(월)	「이달의 입법민원」 (2024.11호) 발간	국회도서관	
	12/1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3호(2024-25호) 발간		
	12/18(수)	「THE 현안」 제38호(2024-38호) 발간		
	12/18(수)	「금주의 서평」 제708호(2024-49호) 발간		
	12/19(목)	「NABO Focus」 제83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2/20(금)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발간		
	12/16(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해외 법제 및 시사점 (NARS 현안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12/16(월)	2024년 미국 대통령·의회선거 분석(NARS 현안분석)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2/9(월)	「THE 현안」 제37호(2024-37호)	국회도서관	
	12/1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2호(2024-24호)		
	12/11(수)	「Data&Law」 2024-13호		
	12/11(수)	「금주의 서평」 제707호(2024-48호)		
	12/9(월)	「NABO Focus」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12/10(화)	「NABO Focus」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		
	12/9(월)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방안’(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12/10(화)	‘기술료 제도의 법령용어 관련 쟁점과 정비방안’(이슈와 논점)		
	12/10(화)	‘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슈와 논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09~12.15)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09(월)	ESG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9) 주요 내용과 시사점
12/10(화)	바이오/헬스케어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선정 안내
12/11(수)	조세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용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사건 승소 사례
12/13(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4 (2024년 12월 2째주)
12/13(금)	바이오/헬스케어	공개변론을 거쳐 중앙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12/13(금)	입법전략자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